

【붙임】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8.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안의 입법예고 실시(안 제3조)
 -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법예고 실시
- 예고문 작성 및 예고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 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군 홈페이지 등에 병행게재
- 입법예고 기간을 규정함(안 제6조)
 - 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및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
- 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조 례 안 : 별첨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관계부서승인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08. 2.29 ~ 3.21 실시, 의견 없음.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군수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문 작성) ①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全文)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①입법예고는 군보에 게재하되, 군 홈페이지·우리고장소식지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병행하여 게재할 수 있다.

②군수는 당해 입법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제3조제1항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청회) ①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시행일 2003.07.01.]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삭제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 ①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치법규안 입법예고)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 1. 9]

②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